교육혁신위원회 규정

제정 2022. 7. 29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 교육혁신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위원회에 관하여 정관, 학칙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.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심의한다.

1. 교육혁신 정책의 수립 및 추진
2. 전공 교육과정의 평가 및 개선
3. 교양 교육과정의 평가 및 개선
4. 비교과 교육과정의 평가 및 개선
5. 교수학습의 평가 및 개선
6. 기타 교육혁신과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

제4조(구성 및 임기) ① 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부총장, 미래교육혁신원장, FIND칼리지학장, 교무연구처장, 기획처장, 학생취업지원처장, 입학처장, 교육성과관리센터장,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.

②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하며, 위원회 업무를 위하여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④ 위원장은 교육혁신을 위한 연구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5조(회의)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② 정기회의는 학기당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.

③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미래교육혁신원장이 회의의 위원장이 된다.

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부서

의 장과 교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6조(회의록)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②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.

제7조(관계 부서의 협조) 위원회는 교직원 및 관계 부서(위원회)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, 행정지원 등 업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, 해당 교직원 및 관계 부서(위원회)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8조(간사) 위원회의 간사는 미래교육혁신원 교육혁신팀장으로 한다.

제9조(경비지급)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기획처와 협의를 거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세부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.

부 칙 (기획예산팀-5048, 2022.7.29.)
이 규정은 2022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.